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907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취소 시 2년 내 재공인 불가 조항 신설	3

I. 개요

1.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90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민규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1. 8.

(3) 회 부 일 : 2026. 1. 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여 통관절차 및 관세 행정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받는 경우 그 공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이 취소된 기관이 재공인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 공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5조의5).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취소 시 2년 내 재공인 불가 조항 신설

현 행	개정안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취소 (§255의5)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필수적 취소 요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임의적 취소 요건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공인 당시의 업체와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혜택 적용 정지 처분을 공인의 유효기간 동안 5회 이상 받은 경우 -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신 설>	□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아 취소된 경우 2년 이내 재공인 불가 조항 신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필수적 취소요건 등에 의한 공인 취소 시 2년 이내 재공인 불가 조항 신설</u>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 공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재공인 불가

* 박민규의원안 2026. 1. 8. 제출(의안번호 15907)

□ 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해 공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관세법」 제255조의2¹⁾에서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청이 수출입기업의 법규 준수도 등을 심사하여 우수업체로 공인한 업체에 대해 수출상대국에서 신속통관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AEO 부문별 공인현황]

(2025년 말 기준)

구분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업자	기타	총계
전체	302	193	102	251	136	984

자료: 관세청

AEO 신청업체가 공인신청을 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구분하여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AEO로 공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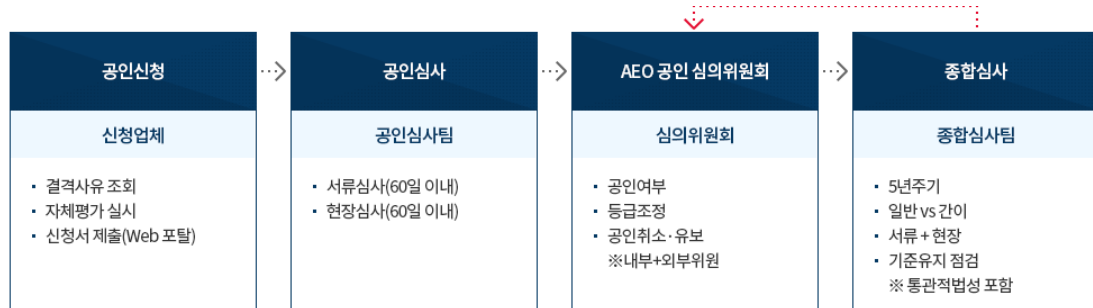
1)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AEO 공인 기준]

기 준	내 용
법규준수	결격사유,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시스템 법규 준수도 확인
내부통제 시스템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등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영업활동, 신고관련 서류의 흐름, 위험관리, 회계처리와 관련된 부서간 상호 의사소통 및 통제체제 평가
재무건전성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적절한 기업규모 및 재정상황(조세체납여부,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등급 등) 확인
안전관리	물리적 위험로부터 방어가 가능하도록 거래업체, 컨테이너, 출입통제, 인사, 취급절차, 시설, 장비, 정보기술, 교육, 훈련 등의 안전성 충족여부 평가

[AEO 공인심사 절차]



자료: 관세청

또한, AEO는 AEO 공인의 유효기간(5년)이 종료되기 6개월 전까지 이를 갱신하기 위해 갱신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²⁾ 관세청장은 종합심사 결과 갱신, 수출입업체의 공인등급 조정, 갱신거부(AEO 취소) 등을 할 수 있음.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19조(갱신심사)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을 갱신하고자 할 때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년 전부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갱신심사 신청서에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통관적법성 심사 등 갱신심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년 전부터 갱신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정기 자율 평가를 2년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여러 공인부문에 걸쳐 공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인일자가 가장 빠른 공인부문을 기준으로 갱신심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동의를 받아 공인부문별 유효기간을 공인일자가 가장 빠른 공인부문의 유효기간에 일치시킬 수 있다.

특히, 현재 관세청은 고시를 통해 신규 AEO를 취득하기 위해 공인심사를 신청하거나, 기존 AEO를 갱신하기 위해 갱신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예비심사를 경유할 수 있도록 하고, 내용안내 및 자문·상담을 하도록 하고 있음.³⁾

- 현행법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가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공인을 취소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개정안은 이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는 등의 사유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 공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입법취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7조의2(예비심사) ① 신청업체는 공인 또는 갱신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예비심사를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예비심사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심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심사 신청서의 기재 방법과 첨부서류의 종류 및 내용 안내
 2. 공인기준 일부에 대한 예비적 심사(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확인 포함)
 3. 그 밖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상담
-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업무를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관세청장은 중소 수출기업이 예비심사를 신청한 경우 다른 신청업체에 우선하여 예비심사를 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관세청장으로부터 예비심사관련 서류를 이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관세청장은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예비심사를 마쳐야 한다.
- ⑥ 관세청장은 수탁기관이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사항을 검토한 후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⑦ 관세청장은 공인심사 및 갱신심사를 하는 경우 예비심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관세법」

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공인 당시의 업체와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3.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제255조의3제3항에 따른 정지 처분을 공인의 유효기간 동안 5회 이상 받은 경우
5. 제255조의3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AEO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경우는 고의성이 높아, 공인 취소 만으로는 제재의 실효성이 충분치 않을 수 있음. 재공인 제한 규정을 신설할 경우, 부정 취득의 유인을 차단하고 성실업체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둘째, AEO 공인의 신뢰성과 제도 운영의 엄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AEO는 통관상 혜택을 전제로 하는 만큼 공인 자체의 신뢰가 핵심인데, 부정 취득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단기간 내 재공인이 가능하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고, 이는 수출상대국에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수혜받는 AEO 제도의 특성상, 우리나라의 AEO 제도의 대외적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음. 참고로, EU에서는 AEO 공인 취소 후 재공인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⁵⁾

추가적으로, 현행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여야 하며,⁶⁾ 이와 같이 특허가 취소된 자는 원칙적으

5) EU 집행위원회(Commission) ** 「Authorised Economic Operators (AEO) Guidelines」 (Rev.6)**는, 관세 당국 주도로 AEO 인증이 취소(revocation)되는 경우 취소일로부터 3년 이내 신규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는 운영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If a revocation is decided by the competent customs authority, a new application for an AEO authorisation will not be accep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revocation. European Commission, Rev.6 Authorised Economic Operators (AEO) Guidelines (TAXUD/B2/047/2011-REV6), 11 March 2016, Part 5, Section V (Revocation)

6)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로 취소일로부터 2년간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운영인 결격) 규정하고 있음.⁷⁾

참고로, 재정경제부에서는 법규 준수도가 우수한 업체에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 혜택을 부여하는 AEO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고, 「관세법」상 특혜를 부여하는 다른 제도들⁸⁾도 취소 시 재등록 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75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년 이내에 3회 이상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4. 2년 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서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177조의2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

7)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제외한 기존의 다른 특허를 받은 특허보세구역에 한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가. 제178조제2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해당 특허가 취소된 날
 - 나. 제27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같은 항 제6호(제178조제2항제1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날
7.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제275조의4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하는 법인

8) 세율불균형물품 면세 지정(제89조),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 특허(제175조), 보세운송업자등 등록(제223조)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제17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해당 공장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재직하는 법인

한기간을 두는 점을 같이 고려했을 때 일정 기간 재공인 제한을 두는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힘.

문 의 처
02)6788-5158

-
-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1년 이상 휴업하여 세관장이 지정된 공장의 설치목적 달성을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보세운송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
 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4.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났을 것